#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37 발의연월일: 2024. 11. 20.

발 의 자: 안호영·주철현·어기구

이춘석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이학영 · 이상식 · 조인철

박홍배 • 이용우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,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정부, 학계, 민간 등 분야별로 기상청의 표준시나리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표준시나리오의 분야별 구체적인 활용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은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,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

제4조제1항 후단 및 제9조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상청장은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기 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--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 ·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 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기상청장은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② ~ ⑧ (생 략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 |제9조(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 리오의 생산 등) ① ~ ④ (생 리오의 생산 등) ① ~ ④ (현 략) 행과 같음) ⑤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<신 설>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시나리 오의 활용에 관한 현황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